

# 2020년도 제8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 I. 회의 개요

- 일 시: 2020. 5. 27.(수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최승수(분과위원장), 박성호, 박재화, 박정인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전자(제2020-81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제2호: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 제3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4.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 II. 회의내용 및 결과

###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732건(안건번호 제2020-31844호~32779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0-31844호~31908호는 밴드명만으로는 불법복제물 공유를 주된 목적으로 개설,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밴드에서 영화를 제공한 사안임. 최근 개봉한 영화를 제공하여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해당 밴드에서 복수의 영화 불법복제물을 제공한 점, 동일한 복제·전송자가 복수의 영화 불법복제물을 제공한 점, 해당 밴드의 폐쇄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0-31909호~31927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영리 목적으로 만화 불법복제물을 복제·전송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0-31928호~31931호는 블로그에서 시판 중인 악보를 제공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0-31932호~31935호는 일본 애니메이션 주제가의 일본어 가사, 일본어 발음 우리말 가사, 우리말 가사 등을 제공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공정이용 등 저작권제한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정권고를 부결함.

안건번호 제2020-31936호는 임베디드 링크를 통해 공식 유튜브 채널의 뮤직비디오를 제공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불명확하므로 시정권고를 부결함.

안건번호 제2020-31937호는 '●●● ●●●● ●●●●'의 음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토렌트 시드파일을 게시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0-31938호~31963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상업용 소프트웨어 복제물과 제품키, 크랙파일 등을 판매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컴퓨터프로그램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0-32779호는 쇼핑몰에서 특정 제품 판매를 위해 이미지를 무단 이용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의 이미지는 특정 제품 판매를 위해서만 이용되는 것으로 보여 해당 이미지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불명확하여 시정권고를 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 1,605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제2호: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 주요내용: 권리주장자가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명령을 청구한 11건 (안건번호 제2020-2254호~2286호)
  - 회의결과: 복제·전송자 정보 제공 명령 요건을 충족하는 33개 안건

{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31개 안건, 저작권 침해의 개연성이 부족한 9개 안건(7개 안건은 부결 사유가 중복)}은 부결함.

o 제3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 주요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미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한 해외 저작권침해 사이트 17개의 대체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총 2,118개의 URL 정보에 관해 '구글' 검색결과 제한 협조 요청 여부 (안건번호 제2020-30317호~32434호)
  
- 회의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미 접속차단 조치한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대체사이트 17개, 총 2,118개의 URL 정보에 관해 검색제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가결함.

### Ⅲ. 회의 의사록

#### 1. 개회선언

- 최승수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제8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 2. 전차(제2020-81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최승수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제1호 안건인 시정권고 심의 회의록 6쪽~7쪽의 밴드명, 밴드 소개글, 8쪽의 밴드명, 게시자명, 9쪽의 밴드명, 12쪽의 저작물명, 일자, 사이트명, 13쪽의 사이트명, 13쪽~15쪽의 채널명, 16쪽의 일자, 저작물명, 게시물 내용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제2호 안건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회의록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2호와 제5호에 따라 20쪽~30쪽까지는 비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해당 안건에 대한 공개여부 의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A 위원: 시정권고 심의 회의록의 해당 부분은 비식별 처리해야할 것으로 보임.
- B 위원: 같은 의견임. 민원 내용과 관련 있음.
- C 위원: 동의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회의록은 종전과 같이 해

당 규정에 따라 비공개해야 할 것으로 보임.

- D 위원: 같은 의견임.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밴드명, 밴드 소개글, 게시자명, 저작물명, 일자, 사이트명, 채널명, 게시물 내용은 비식별 처리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회의 부분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2호와 제5호에 따라 20쪽~30쪽은 비공개하기로 결정함.

### 3. 안건상정

####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금일 심의대상의 주요 권리자는 '마이크로소프트', '월트디즈니', '소니픽처스' 등임. 이러한 권리자를 위하여 현재 소송대리 내지 보호활동, 조정, 감정 등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님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C, A, B, D 위원: 제척 사유 해당 없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성원영 전문위원: 금일 심의대상은 안전번호 제2020-31844호~32779호로 심의대상 게시물은 모두 1,732건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 보고로 같음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31844호~31908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총 65개 게시물임. 심의대상 게시물은 모두 영화 불법복제물을 제공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이 존재하는 밴드는 폐쇄적인 밴드가 아니라 누구나 밴드명을 검색하여 접근이 가능하고 게시물을 볼 수 있음.

(안전표를 제시하면서)해당 안전표에는 심의대상 게시물의 저작물명, 게시자, 게시물수, 밴드 회원 수, 밴드명이 정리되어 있음. 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람. 심의대상 게시물의 밴드명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으로 해당 밴드명만으로는 불법복제물 공유를 주된 목적으로 개설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안전번호 제2020-31844호~31908호 밴드 회원 수는 모두 100명 미만임.

(안전번호 제2020-31906호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심의대상 게시물에서 현재 상영 중인 영화 '■■■■■■■■■■■■■■■■■■■■'를 제공하고 있음. 해당 밴드 회원 수는 4명이고, 밴드명은 '♣♣♣♣'임.

(안전번호 제2020-31906호 밴드에 접속하여 보여주면서)해당 밴드의 회원 수는 4명에서 3명으로 감소하였음. 해당 밴드의 리더 아이디는 '♠♠♠♠♠♠♠♠'임. 해당 밴드에서 mp4 파일 형태로 다른 영화 불법복제물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안전번호 제2020-31895호 밴드에 접속하여 보여주면서)안전번호 제

2020-31895호 밴드는 밴드명이 '♀♀♀♀'이고, 회원 수가 3명임. 심의대상 게시물을 제공하고 있는 게시자의 아이디는 실명으로 보임.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영화 '♡♡ ♡♡♡'를 MP4 파일로 제공하고 있음. 해당 밴드의 전체 게시물을 보면 해당 밴드에서 다른 영화 불법복제물도 제공하고 있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네이버 밴드는 회원들의 친목 도모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폐쇄적 성격이 강하므로 프라이버시나 사적인 행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함. 밴드 내 게시물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입장과 전체심의위원회의 결정은 검토보고서 내용으로 대신하겠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건번호 제2020-31844호~31908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A 위원: 저는 밴드 회원 수의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함. 밴드에 이미 불법복제물이 업로드되어 있어 'making available to the public'한 상태임. 시정권고 제도 취지에 부합하게 피해 확산을 선제적으로 막아야 함.
- B 위원: 모두 밴드 회원 수가 100명 이하에 해당함. 해당 사안들에 대해서는 전체위원회에 회부하여 기준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 D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최근 개봉한 영화를 제공하여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
- C 위원: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인정됨.

- A 위원: 동의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안전번호 제2020-31844호~31908호는 가결 3명, 전체위 회부 1명으로 의견이 나뉘었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가결 의견이므로 안전번호 제2020-31844호~31908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31909호~31927호는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도구를 이용하여 신고한 사안으로, 총 19개 게시물임. 웹하드 사이트에서 만화 불법복제물을 판매하고 있음.  
(안전표를 제시하면서)심의대상 게시물에서 불법복제물을 제공하고 있는 OSP는 모두 '□□□□'임.
- 최승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전번호 제2020-31909호~31927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C 위원: 웹하드 사이트에서 영리 목적으로 만화 불법복제물을 복제·전송하고 있음.
- B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아 보임.
- D 위원: 같은 의견임.
- A 위원: 시정권고하는 것이 타당함.



(주)의 문서형태의 허가를 필요로 합니다.”라고 적혀 있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건번호 제2020-31928호~31931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D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아 보임.
- A 위원: 네이버 블로그에서 악보 게시물을 제공하고 있음.
- C 위원: 동의함. 합법 시장에서 시판 중인 악보를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제공하고 있음.
- B 위원: 같은 생각임.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31928호~31931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31932호~31935호는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일본 애니메이션 ‘○○○○○○○○○○’ 오프닝곡 ‘■■■■■■■■’의 일본어 가사, 일본어 발음 우리말 가사를 제공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의 URL에 직접 접속하여 게시물을 보여주면서)안건번호 제2020-31932호는 일본어 가사, 일본어 발음 우리말 가사, 우리말 가사와 유튜브 영상을 함께 게시하였음. 해당 영상물을 재생해보도록 하겠음.

(영상물의 재생 버튼을 누르면서)안건번호 제2020-31932호 영상물은 재생되지 않음. “□□□□ □□□□ □□□□□□ □□□□ □□□□ □□□□-□□□□□□ □□□□ □□□□ □□□□ □□□□ □□□□ □□□□ □□□□ □□□□”라고 나옴.

- C 위원: 일본 애니메이션 저작자가 해당 영상물의 전송 중단을 요청한 것인지?

- 성원영 전문위원: ‘◆◆◆◆ ◆◆◆◆◆◆ ◆◆◆◆ ◆◆◆◆’가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임. 해당 영상물은 유튜브 영상으로 임베디드 링크임.

(심의대상 게시물의 URL에 직접 접속하여 영상물을 재생하면서)안건번호 제2020-31933호는 게시글에 “⓪⓪⓪⓪⓪⓪ ⓪⓪⓪ ⓪⓪⓪”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일본어 가사, 일본어 발음 우리말 가사, 우리말 가사와 1분 30초 분량의 오프닝 곡 유튜브 영상을 함께 제공하고 있음. ‘유튜브’는 Content ID 정책을 통해 권리자에게 수익금을 배분할 것으로 보임. 심의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일본어 가사, 일본어 발음 우리말 가사, 우리말 가사임.

(안건번호 제2020-31934호 조사 자료를 보여주면서)안건번호 제2020-31934호는 애니메이션의 오프닝 곡 영상 없이 일본어 가사, 일본어 발음 우리말 가사, 우리말 가사를 제공하고 있음.

(안건번호 제2020-31935호 조사 자료를 보여주면서)안건번호 제2020-31935호는 일본 애니메이션 가사와 링크를 제공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의 URL에 직접 접속하면서)‘요청하신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라고 확인되어 현재 심의대상 게시물은 삭제된 것으로 보임.

- 최승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전번호 제2020-31932호~31935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A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일본어 가사만 제공한 것이 아니라 일본어 발음 우리말 가사, 우리말 가사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작권 제한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
- B 위원: 공정이용 등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
- D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C 위원: 같은 의견임.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31932호~31935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31936호, 31937호는 권리자인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임. '▽▽▽▽' 사이트에 회원가입 메뉴가 있지만 '가입하기'를 누르면 '회원 가입할 수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음. 또한 게시물 작성자가 '비회원'으로 되어있고 글쓰기 메뉴가 있어서 회원가입 없이도 누구나 게시물 업로드가 가능함.  
(심의대상 게시물의 URL에 직접 접속하여 게시물을 보여주면서)안전번호 제2020-31936호는 '▽▽▽▽' 사이트에서 임베디드 링크를 통해 유튜브 뮤직비디오를 제공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은 2019. 12. 11. 업로드 되었고, 2020. 5. 21. 현재 조회수가 776회임.  
(해당 영상물을 재생하면서)▼▽▼ ▼▽▼▼▽▼' 뮤직비디오는 '◇◇' 유튜브 공식 채널에서 제공 중임. 해당 영상물에는 배너 광고



식 유튜브 채널의 뮤직비디오를 제공하고 있음.

- B 위원: 동의함. 안전번호 제2020-31937호는 토렌트 시드파일을 게시하고 있는 사안임.
- A 위원: 안전번호 제2020-31936호는 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0-31937호는 가결해야 한다고 생각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31936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0-31937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31938호~31963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총 31건 게시물임. 웹하드 사이트 이용자가 어도비시스템즈사의 'Lightroom(Classic) CC', 'Premiere Pro', 'Master Collection', 'After Effects', 'Photoshop', 구글사의 'SketchUp Pro', MAGIX사의 'Vegas Pro', 마이크로소프트사의 'Office', 한글과컴퓨터사의 '한컴오피스', 오토데스크사의 'AutoCAD' 등 상업용 소프트웨어 복제물을 판매함.  
(안전표를 제시하면서)해당 안전표에는 심의대상 게시물의 저작물명, 게시자, 게시물수, 버전, 저작권사, 무료 체험용 제공 여부, 특이사항이 정리되어 있음. 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람. 소프트웨어 복제물의 버전은 대부분 2020년, 2018년으로 비교적 최신 버전임. 해당 권리자들은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30일 무료 체험용 프로그램 또는 라이선스 인증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저작재

산권자가 본 건 소프트웨어의 자유로운 복제·전송을 허용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음. 다만, 심의대상 게시물의 복제물이 정품 프로그램 또는 각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체험용 프로그램과 완전히 동일한 복제물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함.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저작권법이 저작재산권을 부여하고 있는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2차적저작물작성 등 ‘이용’에 포함되지 않는 ‘사용’행위는 저작재산권의 통제범위 밖에 있음. 즉 사용행위의 방법이나 조건을 위반하더라도 이를 이용의 조건으로 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계약위반이 성립할 뿐 저작재산권침해는 성립하지 아니함. 대법원은 “계약으로 정한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이나 조건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용자가 계약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음.

(안전표를 제시하면서)심의대상 게시물 중 설치할 때 자동으로 인증되는 소프트웨어 복제물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라이선스 인증이 요구되는 컴퓨터프로그램의 복제물과 해당 프로그램을 크래킹하는 프로그램 또는 해당 프로그램의 라이선스 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도 있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크래킹 프로그램 또는 라이선스 키를 전송하는 것만으로는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라고 보기 어렵지만 크래킹 프로그램 또는 라이선스 키를 이용하여 심의대상 게시물의 컴퓨터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설치, 복제하게 되면 저작재산권침해가 일어남. 크래킹 프로그램은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라이선스 키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요컨대 저작재산권자가 이용허락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어 복제·

전송자의 심의대상 게시물 제공 행위가 불법복제물 전송에 따른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하지만 심의대상 게시물은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 또는 복제권 침해를 방조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할 수 있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건번호 제2020-31938호~31963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C 위원: 웹하드 사이트에서 상업용 소프트웨어 복제물과 제품키, 크랙파일 등을 판매하고 있음.
- D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음.
- B 위원: 같은 의견임. 컴퓨터프로그램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
- A 위원: 시정권고하는 것이 타당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31938호~31963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32779호는 실명의 민원인이 국민신문고로 신고한 건임.  
(민원 내용을 보여주면서)민원인이 □□□ □□ □□□ □□□□ □  
□□□ □□ □□□□ □□ □□ □□□ □□ □□ □□□□ □□□



- C 위원: 쇼핑몰에서 특정 제품 판매를 위해 이미지를 무단 이용한 사안이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불명확함.
- B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불명확함.
- D 위원: 뿐만 아니라 저작물성이 인정되는지 의문임.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은 대항요건에 불과함.
- A 위원: 동의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32779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31964호~32778호는 웹하드 등 사이트를 통해서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임.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들을 확인해주시기 바람.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하신 심의대상 게시물 중 일부 게시물에 대해 설명하겠음.
- (방송 '코미디빅리그'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32032호는 tvN 채널에서 2011. 9. 17.부터 방영 중인 예능 프로그램의 343회를 웹하드에서 41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방송물의 343회는 2020. 1. 12. 방영하였음.
- (영화 '온워드: 단 하루의 기적'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32252호는 국내에서 2020. 3. 5. 개봉 예정이었으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국내 개봉이 연기된 영화를 웹하드에서 370

캐시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영상물에는 우리말 자막이 포함되어 있음. 참고로 미국에서는 2020. 3. 6. 개봉하였음.

(방송 '슬기로운 의사생활'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 2020-32272호는 tvN 채널에서 2020. 3. 12.부터 방영 중인 방송 프로그램 2화를 웹하드에서 9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드라마는 목요일 오후 9시에 방영 중이며, 총 12부작임.

(음악 '에잇(Prod.&Feat. SUGA of BTS) (가수: 아이유)'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32736호는 2020. 5. 6. 발매된 음원을 웹하드에서 9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음원은 앨범 '에잇'에 수록되어 있음. 웹하드에서 '[Melon]2020년 05월 16일 오전 11시 기준 TOP100' 압축 파일을 제공하고 있으며, 약 100곡 이용 가능함. 참고로 해당 음원의 실연자인 '아이유', '슈가'는 작사, 작곡, 편곡에 참여하였음.

(음악 'Please Don't Cry (가수: 다비치)'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32766호는 2020. 5. 3. 발매된 음원을 웹하드에서 5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음원은 앨범 '더 킹 : 영원의 군주 OST Part 6'에 수록되어 있음. 웹하드에서 '2020년 05월 03일 신곡' 압축 파일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0.05.03.] 다비치 - 더 킹 영원의 군주 OST Part 6' 폴더에서 2곡 이용 가능함. 참고로 방송 '더 킹 : 영원의 군주'는 SBS 채널에서 2020. 4. 17.부터 방영 중인 드라마임.

- C 위원, A 위원, B 위원, D 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직접 PC로 확인하면서)안건번호 제2020-31964호~32778호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하였으며 모두 불법복제물로 판단됨.
- 최승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건번호 제2020-31964호~32778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C 위원: 모두 불법복제물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시정권고함이 타당함.
- D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음.
- B 위원: 모두 불법복제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 A 위원: 같은 의견임. 다만 이미 삭제되었거나 전송이 중단된 게시물의 경우에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31964호~32778호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조치 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전번호 제2020-31932호~31936호, 제2020-32779호는 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0-31844호~31931호, 제2020-31937호~32778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제2호: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제2호 안전에 관한 회의록 21쪽부터 29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

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2254호~2286호 33개 안전{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31개 안전, 저작권 침해의 개연성이 부족한 9개 안전(7개 안전은 부결사유가 중복됨)} 모두 부결함”

○ 제3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제3호 안전에 관한 회의록 30쪽부터 39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 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30317호~32434호의 구글 검색결과 제한을 가결함”

#### 4. 폐회 선언

○ 최승수 분과위원장이 제8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0년 제8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6. 5.

분과위원장 최승수

위원 박성호

위원 박재화

위원 박정인